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훈령 제1509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처리하였을 것”을 “처리한 결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제1항 중 “감사관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면책심의회”를 “부산광역시 면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감사관은 제9조”를 “감사위원장은 제17조”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면책심사신청 제도(제16조 관련)

면책심사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가 없을 것		
나.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 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 견표명 이행 여부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신 심 징 비	명 인 자 (안 위 내 용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신 청 사 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 사 부 서 책 임 자 검 토 의 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종합 의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구체화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함(제5조)
- 나. 감사위원회로의 직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15조, 제17조, 제18조)
-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 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내용을 변경함
(별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